

부산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4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4930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가단3021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3. 16.

판결선고 2022. 4. 13.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가단3021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58,498,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8,498,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호원, 판사 이은명, 판사 정일예

별지